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u>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u>를 감안하여 <u>3등급으로 분류</u>하였습니다. <u>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u>

##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u>미래에셋밸런스TRF성장형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u>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u>미래에셋밸런스TRF성장형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u>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 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u>미래에셋밸런스TRF성장형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u>

2. 집합투자업자 명칭 미래에셋자산운용㈜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 기준일 2025년 06월 1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5년 06월 17일

6.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지

[모집 (매출) 총액]

투자신탁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모집 개시(2022년 07월 29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

집,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dart.fss.or.kr 서면문서: 한국금융투자협회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참고

9.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가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 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어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4.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 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 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5.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원금 손실이 가능하고「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 특히「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6. 원본손실위험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7.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8.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 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9.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이 최초설정일 이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다른 집 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여 자집합투자기구가 되는 방식으로 "미래에셋AI글로벌모멘텀혼 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의 자집합투자기구가 됩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 모집합투자기구의 규 모 등을 감안하여 전환대상 모집합투자기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동 전환으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으며,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유동성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유동성 위험과 연관된 집합투자기구의 특성 및 그로인해 유동성이 부족하여 환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외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므로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에 따 라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경우 환매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11. 이 집합투자기구는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해당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원급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래에셋밸런스TRF성장형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DW363)

투자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미래에셋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u>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u>를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을 주로 국내외 집합투자증권 등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함으로 재간접형투자위험, 국가위험, 환율 변동위험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미래에셋밸런스TRF성장형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 ·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전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투자목적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 산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투자전략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에 80% 이상 투자하며, 별도의 환혜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모투자신탁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시장 특성을 감안한 중장기 전략배분안을 수립하고 경기 국면별로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며 운용합니다. 이를 위해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내외 주식, 채권, 리츠 를 포함한 부동산, 원자재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하여 투자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프리미엄 자산 선별과 신규 펀드 발 굴등을 통해 알파 수익을 추구 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혼합자산,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모자형, 종류형

# 투자비용

3711. 73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천원)					
클래스 종류	판 사 수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 총보수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 인연금(C-P)	-	0.81	0.36	-	1.19	121	249	383	669	1487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 연금(C-Pe)	-	0.63	0.18	-	1.06	108	222	341	596	13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 직연금(C-P2)	-	0.75	0.3	-	1.14	116	239	367	641	14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 연금(C-P2e)	-	0.6	0.15	-	1.04	106	218	335	584	12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 직연금 사전지정운용(O)	-	0.57	0.12	-	0.95	58	119	183	320	712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이 투자신탁은 종류 A형 및 C형 클래스를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29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주5)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합성 총보수·비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된 보수와 기타비용에 투자비율에 따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추정치(기타비용제외)는 약 0.380%로 추정됩니다.

## 투자실적 추이 단위: %)

	최초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클래스 종류	설정일	24.06.01~ 25.05.31	23.06.01~ 25.05.31	22.08.24~ 25.05.31	-	이후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 금(C-Pe)	2022.09.20	8.29	11.96	-	-	7.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 연금(C-P2)	2024.07.02	-	-	-	-	6.91	
투자신탁	2022.08.24	8.96	12.65	-	-	8.12	
수익률 변동성	2022.00.21	9.20	8.04	7.83	-	7.83	

(주1) 비교지수: 없음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비교 가능한 지수는 없습니다.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 기간동안의 세전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써,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 인력

			운용현황(25.05.31기준)		연평균	동종집합 수익률(해외	투자기구 혼합자산)(딘	<u></u> 년위: %)	0.0
성명	생년	직위			운용	용역	운용	용사	운용 .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0727
송진용	1975	본부장	37개	13,362억원	-	-	9.98	12.28	20년7개월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4)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운용전문인력 정보는 "투자설명서" 제2부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3.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4.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5.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6. 이 집합투자기구의 모투자신탁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 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7.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 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 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종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 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상품투자 위험	상품(Commodity)의 가치는 해당 종목의 수요/공급 및 글로벌 경제성장률, 천재지변, 지리적/정치적 위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 위험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주식이나 채권 등 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훨씬 큰 특징이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및 인프 라 자산 투자위 험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의 가치는 해당지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및 기타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 위험수준에 노출됩니다.
	피투자집합투자 기구 보수 등 부 담 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 이상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에 따른 보수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각각의 개별적인 운용전략에 따라 운용되며 이에 대한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형투자 위험	국내 또는 해외의 주식, 채권, 부동산투자증권, 상품(Commodity)관련 파생상품, 파생상품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라 하더라도 지역간 또는 자산의 종류간 시장상황에 따른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적극적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각종 '집중투자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의 급변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별 또는 지역적으로 충분히 분산하여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투자전략이 투자위험을 반드시 낮춰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매입방법	제3영업일에 2. 17시 경고	7시 이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경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7시 경과후 : 자금을 납입하는 영업일(D)로 부터 경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방법	1. 17시 이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6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2. 17시 경과후 : 환매청구일(D)로 부터 제6영업일에			
환매 수수료	[ C-P, C-Pe,	C-P2, C-P2e	e, C-P2I, O, F ] 없음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제7영업일에 환매대금 을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투자· 게시'	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상당액]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을 공고· 루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 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는 판매:	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 • 단	판매회사・한	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구분			과세	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	<mark> 구</mark> 집합.	투자기구 단계에서는 <u>별도의 :</u>	소득과세 부딛	<b>ł이 없는 것이 원칙</b> 입니다.			
	수익자	로 원		<b>└</b> 득합계액이	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과세	연금저축계 가입자에 디 과세	<mark>좌                                    </mark>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자세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계의 세제	그 세금을 모달하며 얼마 도사진단 도사지었는 살이야 세육이 진혼됩니다. 사세야 사양은 도사실명서 #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	음.						
집합투자 업자	미래에셋자신	<u> </u> 산운용㈜ (대.	표번호 : 1577-1640 / 홈페이지	: http://inv	estments.miraeasset.com)			
모집기간			29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 • 매출 총액	10조좌(단, 모집예정 금액 한도 내에서 존속기간 동안 계속 모집 가능)			
효력발생일	2025년 06월	날 17일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기	다 (http://inv	restments.miraeasset.com) 및	한국금융투자	다협회 (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4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 <sup>5</sup>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F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음과 같습니다.			
	종	류		집합	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매수수료미징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구형(C)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 기구의 종류	판매 경로	온라인		가 저렴한 집	합투자기구로 <b>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b> 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b>별도의 투자</b> 나.			
	で で と	오프라인	오프라인정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진화투자기구로 <b>오라이으로 판매되는 진화투자</b> 기					

		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회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펀드 등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7157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 기구입니다.
	퇴직연금 사전 지정 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 니다.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판매회사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및 QR코드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http://investments.miraeasset.com)



## [목 차]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3. 모집(판매)예정금액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 5. 인수에 관한 사항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 4. 집합투자업자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11. 매입,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권리에 관한사항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밸런스	미래에셋밸런스TRF성장형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DW112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DW120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DW121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DW128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DW122		
종류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DW129		
종류F	수수료미징구-직판-펀드 등	DW637		

####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혼합자산

다. 개방형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모자형, 종류형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 모자형투자신탁은 모투자신탁과 그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 \* 종류형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을 의미합니다.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 **모집(판매)예정금액**: 10조좌

주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집예정금액 한도내에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모집 (판매) 기간	모집 개시(2022년 07월 29일)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판매됩니다.
모집(판매) 장소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investments.mirae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방법 및 절차	판매회사의 영업일에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매입, 환매가 가능합니다.

<sup>\*</sup>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미래에셋밸런스	미래에셋밸런스TRF성장형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DW112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DW120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DW121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DW128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DW122		
종류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DW129		
종류F	수수료미징구-직판-펀드 등	DW637		

####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자	내 용
2022.07.29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2022.08.12	종류O 신설
2022.08.24	최초 설정
2024.06.14	환매대금 지급일 변경(제9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 청구시 제10영업일) → 제6영업일(17시 경과후에 환매 청구시 제7영업일)

##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4. 집합투자업자

####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 나. 운용(지시) 업무등의 위탁 여부

해당사항 없음.

<sup>\*</sup>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 가.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이력
송진용	1975	본부장	/미녀 / 개워	(03년~06년) 대신증권/대신투신운용 마케팅, 주식운용 (06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운용현황(25.05.31기준)		연평균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혼합자산)(단위: %)			성과보수	가 약정된
성명 집합!	집합투자기구	0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송진용	37개	13,362억원	-	-	9.98	12.28	-	-

(주1)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운용현황과 수익률은 모펀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 <모투자신탁 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성명	생년	직위	운용 경력년수	운용이력
정도옥	1987	팀장		(12년~15년) Ingensoma Arbitrage Ltd. / 선물옵션운용 (15년~17년) 이베스트투자증권 / 선물옵션운용2팀 (17년~21년) 국민연금공단 / 패시브투자팀(패시브포트폴리오 운용) (21년~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자산배분부문

	운용현황(2	5.05.31기준)	연평균	동종집합 수익률(해오	성과보수	가 약정되		
성명 집합투	집합투자기구	으요그ㅁ	운용역		운용사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정도옥	2개	2,058억원	8.99	12.70	9.98	12.28	-	-

#### 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	-

## 다.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명 칭	기 간	(책임/부책임)운용전문인력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2022.08.24 ~ 2023.04.13	김형우(책임)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2023.04.14 ~ 2025.06.16	김정욱(책임), 정도옥(부책임)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2025.06.17 ~ 현재	정도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 투자신탁, 혼합자산, 개방형, 추가형, 모자형, 종류형

##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233조에 의거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u>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u>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자투자신탁	모투자신탁투자비율
미래에셋밸런스TRF성장형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80% 이상

####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구분	최초설정일	가입자격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2022.08.24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2022.09.20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2024.07.0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2022.08.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2022.08.2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20억 이상 가입자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 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 계좌 중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의한 가입 자
종류F 수수료미징구-직판-펀드 등	2022.08.24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 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입자

## (2) 종류별 수수료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지급비율(연 %)								
구분		보수							
1 2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운용 보수	판매 보수	신탁 보수	사무 관리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	-	-	0.4	0.36	0.03	0.02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	-	-	0.4	0.18	0.03	0.02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	0.4	0.3	0.03	0.02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	-	-	0.4	0.15	0.03	0.02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고액	-	-	-	0.4	0.03	0.03	0.02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 정운용	-	-	-	0.4	0.12	0.03	0.02
종류F 수수료미징구-직판-펀드 등	-	-	-	0.4	-	0.03	0.0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미징구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판매수수료선취형(A) 및 판매수수료미징구형(C)을 동시에 보유하지 않아 클래스 간 판매수수료 차이 및 보유기간에 따른 비용역전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직판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증권을 직접 판매하며 다른 판매회 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비해 일반적으로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 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 되지 않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방침에 따른 고액거래자에게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타	펀드 등	펀드가 투자하는 용도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 자기구입니다.

##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 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 투자신탁(재간접형)	80% 이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혼합자산형 집합투 자기구입니다.
2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2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단, 대규모 환매청구의 발생, 모투자신탁의 환매제한 등의 사유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내에서 20%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조항에도 불구하고 모투자신탁의 투자비율이 80% 미만으로 축소될 수 있음)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3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주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 ~ (2)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개월간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 ~ (2)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계산

##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이내에서도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 ①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자산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재산의 80% 이상을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의 가격상승에 따른 투자수익을 추구합니다.
- ② 이 투자신탁에서는 별도의 환혜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 비교지수: 없음

다양한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비교 가능한 지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기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 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모투자신탁명칭	주요투자전략
미래에세옥웨더호하자사모트자시탄(재가전형)	이 투자신탁은 중장기 전략배분안을 수립하고 경기 국면별로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며 운용합니다. 이를 위해 주된 투자 대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국내외 주식, 채권, 리츠를 포함한 부동산, 원자재 관련 집합

투자증권)에 분산하여 투자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프리미엄 자산 선별과 신규 펀드 발굴등을 통해 알파 수익을 추구 합니다.
※ 비교지수: 없음

주1) 각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 네덜란드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1,118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777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950.0
(YoY , %)	6.2	4.3	0.1	수입 (2023 년 , 십억 US\$)	825.8
주요산업	농업, 전자기	농업, 전자기기계 및 부품, 화학, 석유, 건설, 어업 등			

## 독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4,456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411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2,104.0
(YoY , %)	3.2	1.8	-0.3	수입 (2023 년 , 십억 US\$)	1,927.0
주요산업	섬유, 석탄, <i>,</i>	넘유, 석탄, 시멘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식음료, 선박 등			

##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27,361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4,196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2,050.7
(YoY , %)	5.9	1.9	2.5	수입 (2023 년 , 십억 US\$)	3,826.9
주요산업	기술, 금융, :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 브라질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2,174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2,005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389.6
(YoY , %)	4.8	3	2.9	수입 (2023 년 , 십억 US\$)	346.6
주요산업	섬유, 신발, 3	섬유, 신발, 화학, 시멘트, 목재, 철 등			

## 스위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885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86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661.6
(YoY , %)	5.4	2.6	0.7	수입 (2023 년 , 십억 US\$)	554.4
주요산업	기계, 화학,	기계, 화학, 시계, 섬유, 관광, 정밀 기기, 제약, 금융, 보험 등			

##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6세Ⅱ조	

GDP(2023 년 , 십억 US\$)		3,3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1,075.0	
(YoY , %)	8.7	4.4	0.1	수입 (2023 년 , 십억 US\$)	1,116.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4,213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920.7	
(YoY , %)	2.6	1	1.9	수입 (2023 년 , 십억 US\$)	989.8
주요산업	자동차, 전지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17,795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3,511.0
(YoY , %)	8.5	3	5.2	수입 (2023 년 , 십억 US\$)	3,125.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입	섭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급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 캐나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2,1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879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717.7
(YoY , %)	5.3	3.8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726.1
주요산업	석유, 자동차, 금, 천연가스 등				

## 프랑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3,031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37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1,052.0
(YoY , %)	6.4	2.5	0.7	수입 (2023 년 , 십억 US\$)	1,099.0
주요산업	기계, 화학, 금속, 자동차, 항공, 전자, 섬유, 관광 등				

#### 호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1,584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676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447.5
(YoY , %)	2.1	4.3	3	수입 (2023 년 , 십억 US\$)	363.6
주요산업	광업, 운수장비, 식품가공, 화학 등				

<sup>\*</sup>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 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위험관리

#### ① 포트폴리오위험관리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에 준하게 되며, 모투자신탁의 포트폴리오 및 환위험 등에 대해서는 모투자신탁 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은 별도의 환혜지를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므로 환위험에 관한 사항은 아래 모투자신탁의 환위험 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 ① 포트폴리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펀드에 대해 20% 이하, 동일 ETF에 대해 30% 이하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

#### ② 유동성 위험 및 관리, 비상대응계획

#### [유동성 위험]

모투자신탁의 보유자산의 시장 유동성 저하 등으로 인한 자금유출에 적절이 대응하지 못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유동성 관리]

해당 펀드는 규모와 운용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모투자신탁을 대상으로 유니버스를 구축하여 유동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또한, 편입 모투자신탁별 최대 투자 비중 한도를 정해 특정 펀드에 과한 쏠림을 방지하고, 편입 펀드의 총 자산 대비 투자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유동성 위험을 관리합니다.

#### [주요 비상대응계획]

내부 위기상황 지표를 설정하고 일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위기단계별(주의, 경계, 심각)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주의단계에서는 투자집중도등 포트폴리오 점검, 위기발생원인과 지속가능성등을 검토하게 됩니다.경계단계에서는 부실가능자산자산에 대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하고심각단계에서는 전사적인 차원의 위기대응(예, 유동성 확보방안 마련 및 실행, 필요시 법령의 절차에 따른 환매연기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③화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에서는 별도의 환혜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환혜지 여부는 투자설명서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편입 자산의 성과에 따라 실적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서 투자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모투자신탁에 적용되는 투자위험은 자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투자위험들은 모투자신탁 및 자투자신탁에 동시에 적용되는 위험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 상품 투자시 인지해야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가. 일반 위험(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일반적으로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종목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투자대상종목의 가치는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채권의 가치는 이자율 등 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시장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가격을 결정하는 할인율이 함께 상승함에 따라 그 가치가 하락하는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채권투자 시에도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파생상품 위험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품투자 위험	상품(Commodity)의 가치는 해당 종목의 수요/공급 및 글로벌 경제성장률, 천재지변, 지리적/정치적 위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등을 통해 간접적인 방법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 위험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주식이나 채권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훨씬 큰 특징이 있습니다.
부도등의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종목의 발행회사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장외파생상품투자의 경우 거래상대방이 파산하거나 신용위기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금 전액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 가격 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들은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주식과 같은 가격변동위험이 있습니다. 주식의 가격은 해당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편, 집합투자증권 및 주식 외의 채권 등 비교적 안전자산에 투자한다고 할지라도 해당 종목의 가격변동에 의해 원금손실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간접투자 위험	주요 투자대상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용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환헤지 미시행)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율변동위험 제거를 위한 환혜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외국통화에의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위험에 100% 노출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KRW)와 해당국가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외국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께서는 투자금액을 고려하시어 이 집합투자기구와는 별도로 환혜지방안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및 인프라 자산 투자위험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의 가치는 해당지역의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이자율 등여러 거시경제지표의 변화 및 기타 가격변동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집합투자기구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투자하게 되는 경우라도 부동산, 인프라 관련 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과 동일한위험수준에 노출됩니다.
소규모펀드의 타펀드 자동전환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아래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이내에 수익자총회 또는 다른 방식의 투자자 동의 없이 자본시장법 제233조에따라 이 투자신탁의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를 모집합투자기구로 하는 자집합투자기구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다만, 전환 시점에 모집합투자기구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전환대상 집합투자기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정할 예정입니다. 1)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5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2)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원본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매입한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나. 특수위험(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 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매우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으로 인해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국가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신흥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투자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앞서 설명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흥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투자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위험(자금송환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해당 국가로부터 이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및 매매차익의 본국송환 행위 또는 증권의 매매절차와 관련한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대상 국가로부터의 투자제한의 적용 또는 자금의 송환에 대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거나 거절 당함으로써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예탁증서(DR)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 투자시 주식예탁증서(DR 또는Depository Receipt)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식예탁증서는 본국에서 발행된 주식(원주)을 기초로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이 시장상황에 따라 원주의 주가움직임과의 괴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환율변동: 주식예탁증서 표시 통화와 원주의 표시통화 간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본래 기업가치의 변화 없이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위험: 원주가 거래되는 국가와 주식예탁증서가 거래되는 국가가 다르기때문에 양 국가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선진국에서거래되는 주식예탁증서라 하더라도 해당 종목의 원주가 속한 국가의정치/사회/경제적 불안정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기타 변수: 양 국가간 시차, 자본시장 규모 및 투명성 차이 등
집중투자에따른 위험(지역)	이 집합투자기구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 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전체 투자 가능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집중투자에따른위험(섹터)	이 집합투자기구는 일부 산업에 속하는 증권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동성 및 투자한 특정 섹터의 위험이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유형의 일반적인 집합투자기구 혹은 해당 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클 수 있습니다.
자산배분형투자위험	국내 또는 해외의 주식, 채권, 부동산투자증권, 상품(Commodity)관련 파생상품, 파생상품 등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투자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라 하더라도 지역간 또는 자산의 종류간 시장상황에 따른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적극적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하는 경우 앞서 설명한 각종 '집중투자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집합투자기구 기준가격의 급변요인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별 또는 지역적으로 충분히 분산하여 동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투자전략이 투자위험을 반드시 낮춰준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리밸런싱 위험	국내외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 등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의 가격이 급등락하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경우 편입비 조절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등 부담 위험	이 투자신탁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 이상 투자하는 재간접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이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기타비용 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에 따른 보수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각각의 개별적인 운용전략에 따라 운용되며 이에 대한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외국 세법에 의한 과세 위험	해외 증권은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되므로 특정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국가의 세법이 변경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외국펀드 설립지 국가 위험	이 투자신탁은 외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에도 투자하며, 이 경우 외국감독기관의 규제를 받습니다. 투자자들은 자국 금융감독기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규제 보호 장치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외국운용사 관련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에 소재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성과는 외국 집합투자업자 인력의 전문성 및 투자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능력에 크게 좌우됩니다. 또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결정으로 인하여 피투자펀드가 손실을 입거나 달리 투자하였을 경우 갖게 될 이익 창출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투자 관련 업무에 개입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간접투자 유동성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자산의 거래량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환매 연기나 거래비용 증가 등으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장집합투자기구 유동성위험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집합투자기구는 주식 등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산과 비교하여 거래량이 적을 수 있으며, 이는 매매체결을 지연시키거나 거래가격의 급변동의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등(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 기구의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 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세부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자금 회수위험 (유동성위험)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 자산이 매각이 어려운 자산일 경우 환매에 대응하기 위한 자산의 중도매각이 어려워 환매에 제때 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중도매각에 따른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환매청구시위험	환매를 청구하는 날과 환매대금을 결정하는 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한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기간 중에 환매한 경우에는 환매수수료의 부과로 인해 투자손실이 발생하거나 손실의 폭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운용실무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운용실무상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나, 예금이나 보험과는 달리 집합투자기구 운용구조는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이 뜻하지 않게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용실무상 오류는 기준가격 오류의 원인이 되기도합니다.(집합투자업자 등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특히, 해외투자의 경우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상 이종통화의 이용등으로 인해 주문 및 결제상 오류 등 운용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발생가능성이 국내투자시보다 더 높습니다. 또한 국내에 투자하는 때와는 달리 시차에의해 시장의 개/폐장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며, 그 차이로 인해 투자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규모변동 위험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달성을 위한 투자전략의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모가 자산가치의 과도한 하락 또는 환매 등에 의해 적정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투자전략의 수행 또는 충분한 분산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과세제도 변경위험	투자에 따른 손익에 대한 세금부과 방법이나 기준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특히 투자자의 지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세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관한 사항은 투자자 본인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시어 반드시 세무전문가의 조언 등 추가적인 확인을 권장합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을 본 경우라도 과세대상자산에서는 발생한 수익이 있다면 결과적으로 전체 투자결과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자산의 예 : 해외투자시 환차손익, 채권투자시 이자수익 등 *비과세대상자산의 예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투자신탁 해지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이해상충(Potential Conflicts of Interest)	집합투자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와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 대주주 및 그 배우자, 계열회사 및 그 임직원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같음) 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은 위 거래 또는 위 거래로 인하여 얻거나 받은 이익, 커미션 또는 보수에 대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에게 공시할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잠재적 이해상충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회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잠재적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객관적 시장가격 또는 제3의 감정기관의 감정에 따르는 것을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이어야 합니다. 이상의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포함하는 거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및 관련규정상의 제한을 준수합니다.
소프트 달러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는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고객에게 직접적이고 구별되는 이익이 있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시장의 관행을 엄중하게 준수하면서, 회사와 고객에게 최상의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러한 소프트 달러 수수료 정책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으로 회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회사의 운용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조사분석(Research)과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할인에 한정되며 출장, 숙박, 엔터테인먼트, 일반 사무용품 및 서비스, 사무실 및기자재, 회원권, 임직원 보수 또는 직접 지불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프트 달러 수수료(soft-dollar commission): 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급하는 것. 즉집합투자업자가 증권회사 등의 부가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 현금으로지불하는 대신 위탁매매거래 수수료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
해외납세 의무자 관련위험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u>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u>를 감안하여 <u>위험등급을 분류</u>하였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고위험자산 및 고위험자산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80% 미만으로 투자 하므로 위험등급 6등급 중 <u>3등급</u>에 해당합니다. 다만, 설정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3년 경과 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 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위험 수준을 감내할 만한 위험선호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이 본인 의 투자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시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위험등급 분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자체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며, 투자자 본인이 판단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예시)
1	매우 높은위험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	높은 위험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	다소 높은위험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	보통 위험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	낮은위험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	매우낮은위험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 1. "고위험자산"은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2. "중위험자산"은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및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3. "저위험자산"은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 4. 해외투자펀드는 국내펀드 분류기준을 준용하되 환혜지여부·투자국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위험등급을 조정함
- 5. 위에 명시되지 않은 펀드의 위험 등급은 투자대상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함

주1) 이 투자위험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 가. 매입

####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 신청도 가능합니다.

## (2) 가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구분	판매수수료 부과여부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 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의 가입자	없음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없음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 사업자	없음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 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없음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 고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 사업자 중 20억 이상 가입자	없음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 금 사전지정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중 사전 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에 의한 가입자	없음

종류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없음
수수료미징구-직판-펀드 등	원하는 가입자	ᆹᆷ

####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17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나)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납입일로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 다만,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집합투자기구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나. 환매

#### (1)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 청구도 가능합니다.

##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17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6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17시 경과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7영업일에 관련세금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 ※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의 17시[오후 5시] 이전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 (4) 집합투자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집합투자증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집합투자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집합투자증권을 교부합니다.

#### (5)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4영업일전일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제5영업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한 경우
-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 (6)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연기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집합투자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① 집합투자기구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매각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7) 집합투자증권의 부분환매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 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 ③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④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8) 화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ᄌᆮᇵᆒᆸᆸᅱ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시 비용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미발생			
X	X	0			

#### 다. 전환

해당사항 없음.

####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모자형 투자신탁의 경우 아래 사항들은 모투자신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재무상태표 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1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1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공고· 게시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investments.miraeasset.com)·판매회사·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종류별 기준가격이 상이한이유	종류별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별로 기준가격이 서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도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나 모집합투자기구는 자집합투자기구와는 달리 보수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모집합투자 기구와 자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산정방법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은 평가시점에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시점에 기발행된 집합투자증권수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sup>\*</sup>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 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평가방법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주식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장내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권에 한정) 다만, 외화표시 상장채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날에 당해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⑤비상장채권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④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장채권을 포함)
⑥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무증서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⑦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외국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상장 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⑧장외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을 편입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 또는 제출한 평가방법에 의하거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과 당해 장외파생상품 발행회사가 제시하는 가격에 기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평가방법 주요내용: 장외파생상품 평가는 2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평가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적용하며 채권평가회사는 각 사의 독립적인 평가방법으로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가격을 산출
⑨기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의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

<sup>\*</sup>모자형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도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됩니다.

(2)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집합투자재산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설치 및 운영합니다.

구분	주요내용
구성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담당임 원,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담당임원,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기타 위원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
업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1. 집합투자재산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재산 공정가액 평가에 관한 사항 3. 채권평가회사의 선정 및 변경과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4.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 등의 분류 및 평가와 관련하여 적용할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재산 평가오류의 수정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7. 기타 관련 법규 또는 집합투자규약 등에 의해 위임된 사항

##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 증권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율					
구분	가입자격	선취판매 수수료	후취판매 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 수수료		
종류C-P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개 인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 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	-	-	-		
종류C-P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개인 연금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 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의 가입자 중 온라인 투자자	-	-	-	-		
종류C-P2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 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	-	-	-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 -온라인-퇴직 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 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온라인 가입자	-	-	-	-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퇴 직연금, 고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 금 및 개인퇴직계좌, 퇴직연금사업자 중 20억 이상 가입자	-	-	-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 금 및 개인퇴직계좌 중 사전지정운용제 도(디폴트옵션)에 의한 가입자	-	-	-	-		
종류F	집합투자업자가 판매회사로서 직접 판매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기 원하는 가	-	-	-	-		

-직판-펀드 등	입자				
	부과기준	매입시	환매시	환매시	-

<sup>\*</sup> 가입자격의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11. 매입,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Х	급비용(연	간%)			
구분	집합 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 사무관리 회사보수	총 보수	기타비용 주1)	총보수 비용 주2)	동종유형 총 보수	합성총보수 비용 (피투자집합 투자기구 보수포함)
종류C-P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개인연금	0.4	0.36	0.03	0.02	0.81	-	0.81	-	1.19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 라인-개인연금	0.4	0.18	0.03	0.02	0.63	0.05	0.68	-	1.06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퇴직연금	0.4	0.3	0.03	0.02	0.75	0.01	0.76	-	1.14
종류C-P2e 수수료미징구-온 라인-퇴직연금	0.4	0.15	0.03	0.02	0.6	0.06	0.66	-	1.04
종류C-P2I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퇴직연금, 고액	0.4	0.03	0.03	0.02	0.48	0.06	0.54	-	0.92
종류O 수수료미징구-오 프라인-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	0.4	0.12	0.03	0.02	0.57	-	0.57	-	0.95
종류F 수수료미징구-직 판-펀드 등	0.4	-	0.03	0.02	0.45	0.06	0.51	-	0.89
지급시기	최초설정	일로부터 미	 배 3개월 후	급		사유 발생시	-	-	-

주1) 기타비용은 해당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기간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설정일부터 기준일까지의기간) 동안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제외)입니다. 한편 기타비용은 대체로 설정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초기에 과다하게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비용비율의 기본적인 산출 개념은 클래스별로 매일 발생하는 기타비용의 합산액을 기준시점 평균순자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비용발생시점보다 계산기준시점에서 평균순자산이 줄어들 경우 나누는 분모 대비 나누어지는 분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비율상 크게 나타나는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 발생시 각 클래스에 동일 비율로 기타 비용이 적용되지만 위에서 언급한 계산 방식에서 발생하는 분자/분모의 상대적 변동과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해 클래스별로 기타 비용 비율이 다르게 표기되어 나타납니다. 한편, 기타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천원)
증권 거래비용	20,709
금융비용	-

주2) "총보수·비용" 비율은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3) 합성 총보수·비용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해당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타비용을 알 수 없어,이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의 추정: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요 집합투자기구들의 보수/수수료는 약 0.38%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는 추정치이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이며 투자전략의 특성 상 피투자집 합투자증권의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때문에 피투자보수 수준 또한 편입대상 종목 유형에 따라 상당한 차 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및 증권 거래 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반 영하여 기재한 내용입니다.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1,000원)

수익증권 종류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종류C-P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83	170	261	455	10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 인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21	249	383	669	1487
종류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77	159	245	427	94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 직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6	239	367	641	1424
종류C-P2I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5	113	174	303	6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 직연금, 고액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4	193	296	517	1149
종류C-P2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67	138	212	371	82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 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6	218	335	584	1299
종류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69	142	219	382	849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 연금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8	222	341	596	1324
종류F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2	107	164	286	637
수수료미징구-직판-펀드 등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1	186	287	500	1112
종류이	판매수수료 및 보수 비용	58	119	183	320	71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 직연금 사전지정운용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97	199	306	534	1187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u>누계액</u>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투자수익률은 보수 차감전 연간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특정종류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종류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키게 됩니다.
- "전체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집합투자기구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1. 증권 등 자산의 매매수수료
  - 2. 증권 등 자산의 예탁 및 결제비용
  -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지수사용료 등)
  - 9.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 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의 비용을 말합니다.
  -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가. 이익배분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시에 분배합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투자자와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② 또한 집합투자기구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③ 투자자가 상환금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에 귀속됩니다.

#### 나. 과세

아래의 집합투자기구 또는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 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 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펀드에서 외국납부세액 발생 시 펀드 단계에서는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사 등)가 투자자에게 펀드 소득 지급 시 투자자가 납부할 세액(이자·배당소득)에서 투자자별 외국납부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자에게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한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4) 종류 C-P 수익증권 가입자: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 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 원 한도(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조세특례제한법」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 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 백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 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300만 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50세 이상 거주자 [2020년 1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 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연간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연간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포함)
연금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 출하는 경우)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 (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 지 못하고 연금외수령하 는 경우)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 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 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연령에 따른 차등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이 승계 가능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판매회사는 세제혜택을 위하여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이하"납입증명서"라 한다) 를 발급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매입자격위반 또는 투자한도초과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판매회사는 납 입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 (5) 종류 C-P2 수익증권 가입자: 퇴직연금계좌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단,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추가부담금 및 연금저축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연 600만 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 중 연 900만원 이내의 금액)

####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연금수령시 연금수령 방법 등에 따라 과세

#### ③ 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 수령, 연금외 수령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름.

- 연금 수령: 연금소득 과세
- 연금외 수령: 원천별 과세
- 퇴직급여: 퇴직소득 과세
- 퇴직외소득(자기부담금, 운용수익 등): 기타소득 과세

※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 저축 등)이 다음 경우에 해당할 경우 연금 지급액의 5.5% ~ 3.3% (나이에 따라 변경)의 세율로 과세하는 분리과세 가능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 상기 경우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수익자별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기준가격: 집합투자기구(펀드)의 투자원금에 운용성과를 반영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 과표기준가격: 펀드의 투자원금에 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운용성과만을 더하거나 차감하여 계산된 것으로서, 환매 또는 이익분배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과표기준 가격은 비과세대상자산 -"(2)투자자에 대한 과세" 참조 - 에서 발생한 손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한 투자손익이 (-)/손실인 경우에도 투자자는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 ※ 기준가격 및 과표기준가격 적용 사례

예 1)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수익이 발생하여 과세되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 예 2)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모두 손실이 발생하여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원

예 3) 기준가격상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해가 난 상태이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하여 세금이 과세되는 경우 (비과세대상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자산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900원	11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100원*세율(15.4%) = 15.4원

## 예 4) 기준가격상 수익이 발생한 상태지만, 과표기준가격상 수익이 없어 세금이 없는 경우

구분	기준가격	과표기준가격
매입시점	1000원	1000원
환매시점	1100원	900원
손익	(+)100원	(-)100원
세금		과세손익 (-)이므로 세금 '0' 원

# [제2부 별첨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1. 미래에셋올웨더혼합자산모투자신탁(재간접형)

####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추구합니다.

#### 가. 피투자펀드의 투자 필요성

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자산과 다양한 전략으로 운용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여 가격변동에 따른 자본차익을 추구합니다.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직접 자산 편입시 대비 효율적으로 자산배분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나. 피투자펀드의 선정 기준

- 정량과 정성적인 평가를 통하여 투자아이디어에 적합한 펀드를 선정하여 투자합니다.
- 기본적 요건: 규모 100억원 이상, 운용기간 3년이상, ETF 30일 거래량 10,000주 이상(기본요건 미충족시라도 아래 정량, 정상 평가를 통하여 투자될 수 있습니다.)
- 정량평가: 스코어링 모델을 활용하여 위험조정성과, Hit Ratio, Peer성과등을 고려합니다.
- 정성평가: 투자전략 부합도, 운용사 운용스타일을 감안한 피투자펀드 투자전략의 유효성, 포트폴리오에 대한 영향도등을 고려합니다.

## 다. 펀드 실사

투자대상 펀드들이 공모펀드(외국펀드 포함)이므로 필요한 정보를 비교적 용이하고 신속히 획득할 수 있어 별도의 실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펀드리서치 기관의 분석 보고서 활용 및 해당 운용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1)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세부설명
1	집합투자증권등	60% 이상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발행된 것단 주식, 상품, 리츠, 투기등급채권과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에의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를 초과하지 않는다.
2	주식	40% 이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1호의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한하며, 증권예탁증권의 경우 지분증권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채권	40%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및 주식관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4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 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기준 10% 이 하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주식 · 채권 · 일반상품 · 부동산 · 통화나 주식 · 채권 · 일반상품 · 부동산 · 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지수 등에 연계된 것 및 이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7	환매조건부매도	보유증권총 액의 50% 이 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것
8	증권의 대여	보유증권총 액의 50% 이 하	투자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
9	증권의 차입	20% 이하	증권의 차입
10	신탁업자와의 거래	-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11	단기대출주1),금융기관에의 예치주2), 환매조건부매수 및 이에 준하는 외화표시자 산	-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주) 환매조건부매수는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 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함.

- 주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주2) 금융기관에의 예치 :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주3)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sim5$ 의 상기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라) 및  $(\mathbf{r})$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일 이전 1월간
-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라)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1~5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또한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
- 6~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상기 '증권의 대여'는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방법으로 운용
- (가)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 상기 '증권의 차입'은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진행할 수 있음

# ※ 피투자대상펀드 예시(투자비중 상위 5개 펀드)

펀드명	운용사	설정지 국가	주된 투자 대상	투자 비중 (%)
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자투자신 탁1호(UH)(채권)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	글로벌 채권	17%
TIGER 농산물선물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	밀, 옥수수, 대두, 설탕 총 4가 지 농산물 선물	15%
TIGER 원유선물Enhanced(H)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	원유 선물	15%
키움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탁1[채 권]	키움자산운용	한국	국내 채권	10%
Tiger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브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한국	글로벌 채권	10%

<sup>※</sup> 상기 피투자펀드, 편입비는 예시이며 경기국면별로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운용전략 상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0	베서	예외석으로 인	<u> </u>	
		구분	내용	적용제외
	1	이해관계인과 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
	2	동일종목 투 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3	동일종목 투 자(예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투자하는 경우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한 마대·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처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되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지급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구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는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평균한	-

4	동일법인발행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	
7	주식	여 투자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의 집합투	
		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	
		권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	
		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5	집합투자기구	라.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부터 1개월간(
	에의 투자		가목 및 나목
		마.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만 해당)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	
		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	
		수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	
		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상기 집합투자기구에의 투자제한은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40%를 초과하여 투	
		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제한되는 운용관련 규정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집합투자기	
		구에의 투자 중 가목 내지 다목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목 내지 다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	
		증권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	
		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	
		합투자증권	
		2.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이하 "상장지수집합투자	
		기구"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한 상장지	
		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지구와 비슷한 것으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	
		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로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설	
	집합투자기구	정 또는 설립된지 6개월 이상 경과하고 최근 6개월간 법 시행령 제251조제2항	
6	에의 투자(예	에 따른 추적오차율이 연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_
	의 무지(의	의 집합투자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	
	<u> </u>	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	
		①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의 구성종목이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일 것	
		② 당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목표로 하는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수가	
		30종목 이상이고, 각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을 그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의 직전 3개월의 평균시가총액의 합으로 나눈 값이 100분의 20을 초과하	
		지 아니할 것 2. 가요 지하트되었지가 요요되는 지하트되기구의 지하트되게 사용 등 이사의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목을 적용할 때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	
		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	
		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	
		ㅁㅁㅣ^/ㅁ^// ㄷㅇ~/ ㄷㅁㅁㅜ^//ㅣᅴ ^/└ㅇㅋᅴ ユ┉Ⴀᅴ ㅆ️()ᆼᆯ 되와	

		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나목을 적용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 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이나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 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 가목을 적용할 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	
		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1.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 · 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것 2.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	
		략을 활용할 것 3.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	
7	집합투자기구 에의 투자(예	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4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 구의 경우 다음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1.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
	외)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2.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3.「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8	파생상품 투 자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9	파생상품 투 자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 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10	파생상품 투 자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 부터 1개월간
11	파생상품 투 자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 품을 매매하는 행위	-
12	계열회사 발 행증권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
13	후순위채권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

주1) 아래 각 항목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상기2~10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함

-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나)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다)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마)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1) 투자전략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① 이 투자신탁은 중장기 전략배분안을 수립하고 경기 국면별로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며 운용합니다. 이를 위해 주된 투자대상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내외 주식, 채권, 리츠를 포함한 부동산, 원자재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하여 투자하고 시장상황에 맞는 프리미엄 자산 선별과 신규 펀드 발굴등을 통해 알파 수익을 추구 합니다.



# 경기 국면별 적극적인 자산배분과 분산투자로 꾸준한 초과수익 목표

#### ② 운용 프로세스

### [전략적 자산배분 : 중기자산배분]

고위험자산 비중 70% 이내, ShortFall Risk(3년) 10% 이하의 제약요건 하에 자산별 기대 수익률과 변동성등을 고려하여 리스크 대비 효용성이 높은 전략 배분안 도출하고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을 수행합니다. 전략적 자산배분을 위해 미래에셋 자산배분 모델을 활용합니다. 미래에셋 자산배분 전략은 장기/중기/단기의 다양한 투자기간 관점으로 구성됩니다. 장기는 5년 이상의 기간이며 중기는 1년 이내의 기간, 단기는 수개월 혹은 수주내의 짧은 기간으로 대상화 합니다. 장기 및 단기적 관점은 포트폴리오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초점을 맞춘모델이며, 중기적 관점은 수익률 창출을 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 [포트폴리오 구축]

자산배분을 실현할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민감도 분석, 시뮬레이션(포트폴리오 안정성 테스트를 위한 시나리오 분석, 스트레스테스트, 위험기여도분석, 최적화등)을 통하여 자산배분을 실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합니다.

#### [전술적 자산배분]

시장변화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동적 재조정합니다. 매월 자산배분 View를 반영하여 자산별 새로운 배분 비중을 도출합니다. 시장국면 변화, 편입펀드 이상 징후 점검 등 교체사유 발생시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합니다.

#### ※피투자펀드 개요

자산	펀드명	설정일	운용규모 (억원)	주요투자전략	피투자펀드 보수
주식	KODEX 선진국 MSCI WORLD ETF	2016-08-08	4,169.30	23개 선진국의 대형, 중형 종목을 편입하 여 MSCI World지수를 추종	0.30%
411.71	키움단기국공채증권자투자신 탁1 [채권]	2014-02-27	1,185.70	단기 국공채에 투자하여 주식과 낮은 상관 관계 추구	0.15%
	미래에셋미국달러채권증권자 투자신탁1호(UH)(채권)	2018-08-08	929.9	미래에셋달러단기자금증권모투자신탁 (USD)(채권), 미래에셋미국달러우량회사채 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80% 이상 투자하 여 시장금리 국면에 따라 투자 비중 조정 하며 이자 수익과 자본 차익 추구	0.24%
채권	Tiger미국달러단기채권액티 브 ETF	2019-07-22	3,313.00	비교 지수(KIS U.S.TREASURY BOND 0-1Y 지수(총수익지수)) 구성 종목인 미국채 이 외에 미국달러표시 투자등급회사채, 미국 달러표시 KP(Korean Paper), 미국달러선 물에 주로 투자하여 액티브상장지수펀드 (액티브ETF)로 ETF 순자산가치의 변화가 지수 변화를 초과하도록 운용	0.30%
대체투자	TIGER 농산물선물 ETF	2011-01-11	446	'S&P GSCI Agriculture Enhanced Select Index Excess Return'지수를 추적대상지수 로 하여 1좌당 순자산가치의 변동률을 기 초 지수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	0.69%
	TIGER 원유선물Enhanced(H) ETF	2010-08-02	372.3	'S&P GSCI Crude Oil Enhanced Index Excess Return' 지수를 추적대상지수로 하 여 1좌당 순자산가치 변동률을 기초 지수 의 변동률과 유사하도록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0.69%

※ 상기 피투자펀드, 편입비는 예시이며 경기국면별로 투자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운용전략 상 언제든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피투자펀드의 주된 투자대상, 투자전략, 운용사 정보 및 그밖의 정보는 상기 각 운용사별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블랙록자산운용: www.blackrock.com 뱅가드자산운용: investor.vanguard.com 스테이트스트리트: www.ssga.com

#### ※ 비교지수 : 없음

상이한 투자대상자산, 투자전략을 가진 복수의 펀드에 투자하고 주기적으로 투자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특성상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비교 가능한 지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 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집합투자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에게 공시할 예정입니다.

#### ※ 주요 대상 국가 현황 (CIA 및 Bloomberg 기준)

## 영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3,340.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45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1,075.0
(YoY , %)	8.7	4.4	0.1	수입 (2023 년 , 십억 US\$)	1,116.0
주요산업	공작 기계, 전자, 자동화 기계, 철도설비, 선박, 항공기 등				

### 독일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4,456.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411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2,104.0
(YoY , %)	3.2	1.8	-0.3	수입 (2023 년 , 십억 US\$)	1,927.0
주요산업	<b>주요산업</b> 섬유, 석탄, 시멘트 ,자동차, 기계, 화학, 전자, 식음료, 선박 등				

### 캐나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2,140.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879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717.7
(YoY, %)	5.3	3.8	1.1	수입 (2024 년 , 십억 US\$)	726.1
주요산업	석유, 자동차, 금, 천연가스 등				

#### 브라질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2,17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2,005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389.6
(YoY, %)	4.8	3.0	2.9	수입 (2023 년 , 십억 US\$)	346.6
주요산업	섬유, 신발, 화학, 시멘트, 목재, 철 등				

### 호주

거 게 그 ㅁ	이구 및 대이므여 규모
△ 세구□	이그 네 내이브여 그녀
경제규모 경제규모	
O*#11—	

GDP(2023 년 , 십억 US\$)	1,584.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2,676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447.5
(YoY , %)	2.1	4.3	3.0	수입 (2023 년 , 십억 US\$)	363.6
주요산업	광업, 운수장비, 식품가공, 화학 등				

# 네덜란드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1,118.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777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950.0	
(YoY , %)	6.2	4.3	0.1	수입 (2023 년 , 십억 US\$)	825.8	
주요산업	농업, 전자기기계 및 부품, 화학, 석유, 건설, 어업 등					

# 중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17,795.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4,160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3,511.0
(YoY, %)	8.5	3.0	5.2	수입 (2023 년 , 십억 US\$)	3,125.0
주요산업	광업 및 광업 가공, 채광, 철강, 석탄, 군수, 시멘트, 섬유, 소비재 등				

# 미국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27,360.9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34,196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2,050.7
(YoY , %)	5.9	1.9	2.5	수입 (2023 년 , 십억 US\$)	3,826.9
주요산업	기술, 금융, 자동차, 의료, 에너지, 농업 등				

# 일본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4,213.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12,320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920.7
(YoY , %)	2.6 1.0 1.9 수입 (2023 년 , 십억 US\$) 989.8				989.8
주요산업	자동차, 전자, 기계, 철강, 비철 금속, 선박 등				

# 프랑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규모		
GDP(2023 년 , 십억 US\$)	3,031.0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6,837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1,052.0
(YoY , %)	6.4 2.5 0.7 수입 (2023 년 , 십억 US\$) 1,0				1,099.0
주요산업	기계, 화학, :	기계, 화학, 금속, 자동차, 항공, 전자, 섬유, 관광 등			

# 스위스

경제규모				인구 및 대외무역	고모
GDP(2023 년 , 십억 US\$)	884.9			인구 (2024년 추정, 만 명)	886
GDP 성장률 추이	2021년	2022년	2023년	수출 (2023 년 , 십억 US\$)	661.6
(YoY, %)	5.4	2.6	0.7	수입 (2023 년 , 십억 US\$)	554.4
주요산업	기계, 화학,	기계, 화학, 시계, 섬유, 관광, 정밀 기기, 제약, 금융, 보험 등			

투자목적, 투자전략에 특정국가 등으로 투자지역을 한정한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경우, 상기 국가들은 투자 가능국가 중 일부를 기재한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목적 등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상기 국가들이 아닌 국가에도 투자할 수도 있으며, 또한 상기 국가들에 투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의 투자전략과 관련하여 본 투자신탁이 제시하는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2) 위험관리

#### ① 포트폴리오 위험관리

법령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20% 이하, 동일 집합투자업자 운용 집합투자증권 또한 50% 이내로 투자함으로써 기본적으로 분산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관리합니다.이 투자신탁이투자하는 피투자펀드의 위험관리를 위해, 매달 운용 보고서 및 보유 내역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특히 상장지수펀드는 매일 PDF(Portfolio Deposit File, 자산구성내역)가 공시되므로 필요시 수시로 검토합니다. 운용 보고서에는 포트폴리오 개요, 자산구성현황, 펀드 성과, 시장 분석, 운용 경과 및 성과 분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운용 정보가 필요한 경우 피투자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피투자펀드에 대한 위험관리에 활용합니다.

#### ② 유동성 위험 및 관리, 비상대응계획

#### [유동성 위험]

유동성이 풍푸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므로 유동성 리스크는 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응하기 어려운 대규모 자금유출 및 시장 급변 등이 있을 경우 보유자산의 불리한 매각, 환매연기, 적용기준가 조정 (Swing Price) 등의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지정학적 요인 또는 금융시스템 불안 등으로 인한 환매 연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동성 관리]

해당 펀드는 규모와 운용기간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유니버스를 구축하여 유동성 위험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피투자펀드 내 보유현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유동성 위험에 대한 점검을 실 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 비상대응계획]

내부 위기상황 지표를 설정하고 일간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기단계별(주의, 경계, 심각)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의단계에서는 투자집중도등 포트폴리오 점검, 위기발생원인과 지속가능성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경계단계에서는 부실가능자산자산에 대한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하고 심각단계에서는 전사적인 차원의 위기대응(예, 유동성 확보방안 마련 및 실행, 필요시 법령의 절차에 따른 환매연기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사의 모니터링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환매연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투자펀드의 해당 운용사와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 ③ 환위험관리

-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은 환혜지를 실행하지 않습니다.
- 환혜지 장점: 환혜지는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가 원화(KRW)와 외국 통화간 상대적 가치의 변화에 따라 변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환혜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환율 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낮아져야 하지만, 환혜지는 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을 상쇄시켜 줌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문제를 극복하게 해 줍니다. 나아가, 국내보다 금리가 낮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혜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차이만큼 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환혜지 단점: 환혜지 효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장점이 있는 반면 아래와 같이 이에 상응하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즉 환혜지 전략 시행 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환율상승이 있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외화자산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높아져야 하지만, 환혜지는이러한 환율변동에 따른 이익을 상쇄시켜 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가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또한, 국내보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를 대상으로 환혜지를 할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당해 금리 차이만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변동에 따라 손익이 결정됩니다.

#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1. 재무정보

이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반기재무제표를 제외한 아래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의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감사의견
17 (22.08.24 ~ 23.08.23)	해당사항 없음 주1)
27 (23.08.24 ~ 24.08.23)	해당사항 없음 주1)
3기(24.08.24 ~ 25.02.23)(반기)	-

주1)이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240조 및 법 시행령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에 의거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에 대한 적용이 면제되었습니다.

##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항목	37 (25.02.23)	27 (24.08.23)	17 (23.08.23)				
운용자산	10,818	8,977	3,239				
증권	10,770	8,932	3,222				
파생상품	-	1	-				
부동산/실물자산	-	-	-				
현금 및 예치금	48	45	16				
기타운용자산	-	1	-				
기타자산	22	159	1				
자산총계	10,840	9,137	3,240				
운용부채	-	1	-				
기타부채	21	114	1				
부채총계	21	114	1				
원본	8,876	8,062	3,275				
수익조정금	118	-	-				
이익잉여금	960	960	-36				
자본총계	10,819	9,023	3,238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37 (24.08.24 ~ 25.02.23)	27 (23.08.24 ~ 24.08.23)	17 (22.08.24 ~ 23.08.23)			
운용수익	888	606	3			
이자수익	-	-	-			
배당수익	-	147	-			
매매/평가차익(손)	887	458	3			
기타수익	-	-	-			
운용비용	23	23	2			
관련회사보수	23	23	2			
매매수수료	-	-	-			
기타비용	-	-	-			
당기순이익	864	583	1			
매매회전율	155	469	549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예를들어 1회계연도 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입니다.

## 나.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재무상태:	Ε	
항목	37 (25.02.23)	27 (24.08.23)	17 (23.08.23)
운용자산	10,818	8,977	3,239
증권	10,770	8,932	3,222
주식	_	-	-
ETF	_	-	_
채권	_	-	-
매입어음	_		-
수익증권	10,770	8,932	3,222
외화유가증권		-	-
기타유가증권	_	_	_
파생상품	_	-	_
주가지수매입옵션	_	-	_
ELS			_
ELW	_	-	_
DLS	_	-	_
	_	-	_
부동산/실물자산	-	-	-
부동산	- 10	-	-
현금 및 예치금	48	45	16
예금	48	45	16
외화예금	-	-	-
CD	-	-	-
정기예금	-	-	-
위탁증거금	-	-	-
청약증거금	-	-	-
기타운용자산	-	-	_
콜론	-	-	_
환매조건부채권	-	-	_
기타자산	22	159	1
미수이자	-	-	-
미수배당금	-	147	-
매도유가증권미수입금	22	12	1
선물정산미수입금	-	-	-
선납(선급)원천세	-	-	_
기타	_	-	-
자산총계	10,840	9,137	3,240
운용부채	_		-
매도유가증권	_	-	-
미지급주식	_		_
미지급채권	_	-	_
미지급ETF	_		_
주가지수매도옵션	_		_
기타부채	21	114	1
미지급보수	12	9	1
	8	2	1
미지급해지금 미지급이익분배금	0	102	-
	-	102	-
미지급원천세	-	-	-
기타부채	-	-	-
부채총계	21	114	1
원본	8,876	8,062	3,275

# 미래에셋밸런스TRF성장형혼합자산자투자신탁(재간접형)

	1		
수익조정금	118	-	-
이익잉여금	960	960	-36
당기순이익	864	1	-
감자차익/차손	-	-	-
자본총계	10,819	9,023	3,238

# 다.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손익계산서 (면접: 학년 <i>원)</i>							
 항목	37 (24.08.24 ~ 25.02.23)	27 (23.08.24 ~ 24.08.23)	17 (22.08.24 ~ 23.08.23)				
운용수익	888	606	3				
투자수익	-	147	-				
이자수익	-	-	-				
배당수익	-	147	-				
기타수익	-	-	-				
매매이익	969	687	16				
주식매매이익	-	-	-				
파생상품매매이익	-	-	-				
채권매매이익	-	-	-				
외환거래이익	-	-	-				
유동자산매매이익	-	-	-				
ETF매매이익	-	-	-				
수익증권매매이익	969	687	16				
기타매매이익	-	-	-				
매매손실	81	229	12				
주식매매손실	-	-	-				
파생상품매매손실	-	-	-				
채권매매손실	-	-	-				
외환거래손실	-	-	-				
유동자산매매손실	-	-	-				
ETF매매손실	-	-	-				
수익증권매매손실	81	229	12				
기타매매손실	-	-	-				
운용비용	23	23	2				
위탁보수비	19	20	2				
판매보수비	1	-	-				
수탁보수비	1	1	-				
사무관리보수비	-	1	-				
자문보수비	-	-	-				
매매수수료	-	-	-				
기타비용	-	-	-				
당기순이익	864	583	1				
비용	105	252	14				
수익	970	835	16				
천좌당 순이익(원)	91	126	2				

##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단위:백만)

###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세전기준)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화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시어야 합니다.

## 가. 연평균수익률(단위:%)

연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이후	
(기간)	24.06.01~ 25.05.31	23.06.01~ 25.05.31	22.08.24~ 25.05.31	-	설정일~ 25.05.31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8.29	11.96	-	-	7.49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	-	-	-	6.91	
투자신탁	8.96	12.65	-	_	8.12	
수익률 변동성	9.20	8.04	7.83	-	7.83	



\*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단위:%)

연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 5년차
(기간)	24.06.01~ 25.05.31	23.06.01~ 24.05.31	22.08.24~ 23.05.31	-	-
종류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	8.29	15.80	-4.42	-	-
종류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6.89	-	-	-	-
투자신탁	8.96	16.51	-2.8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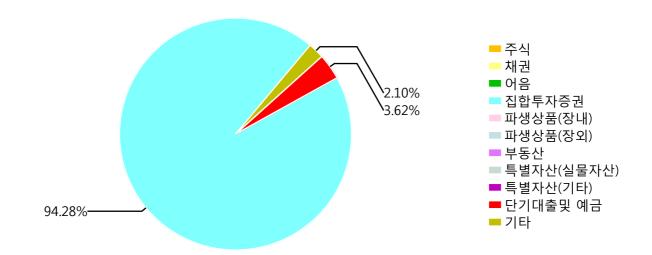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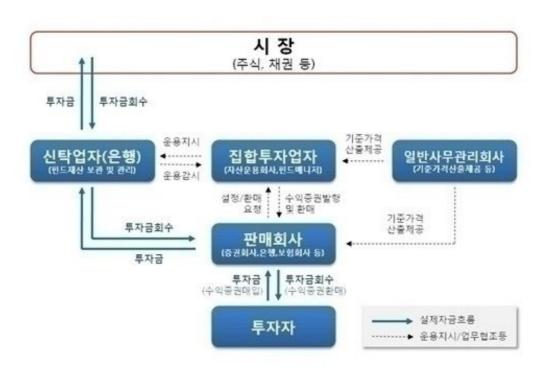
- \* 연평균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 추이는 과세전의 수익률입니다.
- \*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으로서 각 수익증권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연평균 수익률 중 '설정일 이후' 수익률은 편차가 클 수 있습니다.

##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구성 현황 (단위: %, 백만, 2025.03.31 기준)

		증	권		파생	상품	특별자신		특별자산		단기	
통화별 구분	주식	채권	어음	집합 투자 증권	장내	장외	부동산	실물 자산	기타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KRW(한	1	-	_	6,458	-	-	_	1	-	374	223	7,054
국)	1	-	_	60.92	-	-	_	1	-	3.52	2.1	66.55
USD(□	-	-	-	3,535	-	-	-	-	-	11	-	3,545
국)	-	-	-	33.35	-	-	-	-	-	0.1	-	33.45
ᄼᆉᆔ	-	-	-	9,993	-	-	-	-	-	385	223	10,599
합계	-	-	-	94.27	-	-	-	-	-	3.62	2.1	100

## 자산구성현황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증권회사, 은행, 보험회사 등)에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한 금전등을 납입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해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고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금전 등을 납입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발행하고 신탁업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는 투자신탁재산을 증권 등에 투자하도록 운용지시합니다. 투자자(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한 운용결과에 대해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 Tower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우.03159) ☎ 1577-1640		
홈 페 이 지 주 소	http://investments.miraeasset.com		
자 본 총 계	3조 8,749억원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 요 주 주 현황	박 현 주 外		
회 사 연 혁	1997년 07월 미래에셋 설립 2006년 11월 미래에셋투신운용주식회사 합병 2012년 3월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2024년 3월 멀티에셋자산운용주식회사 합병		

<mark>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중 집합투</mark> 자업자의 주요 이해관계인 현황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 나. 주요업무

#### [주요업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 해지 / 집합투자증권의 운용, 운용지시

####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 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백만원)

요 <sup>(</sup>	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 목	2024.12.31	2023.12.31	항 목	2024.01.01 ~ 2024.12.31	2023.01.01 ~ 2023.12.31		
현금 및 현금성자산	92,708	2,640	영업수익	423,329	391,365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	123,681	185,435	영업비용	282,107	296,169		
유가증권	4,647,770	4,175,022	영업이익	141,222	95,196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66,887	21,437	지분법손익	385,105	425,153		
기타자산	6,560	5,950	영업외수익	10,250	1,506		
자산총계	4,937,606	4,390,484	영업외비용	2,916	2,132		
예수부채	20,201	89,015	법인세차감전이익	533,661	519,724		
차입부채 및 발행사채	619,314	619,171	당기순이익	450,732	446,764		
기타부채	423,101	312,140					
부채총합	1,062,616	1,020,326					
자본금	67,861	67,861					
자본잉여금	246,633	246,633					
기타포탈손익누계	80,811	7,977					
이익잉여금	3,479,685	3,047,687					
자본총계	3,874,990	3,370,158					

### 라. 운용자산 규모 (2025.03.31 현재 / 단위:십억좌 / 협회 발표기준)

집	합투			증권			EL 71	I A II			ЕЩ	숙심		투자	
자: 종	기구 등류	주식	혼합 주식	혼합 채권	채권	소계	단기 금융	파생 상품	부동산	재간접	특별 자산	혼합 자산	PEF	일임 기타	총계
수	탁고	57,452	3,739	4,657	40,488	106,33 6	5,701	22,38 6	11,725	47,007	9,424	8,940	934	-	212,453

##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 업무

해당사항 없음.

####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HSBC) 서울지점
주소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37 HSBC빌딩 ☎ 02- 2004- 0000
홈페이지	www.kr.hsbc.com
연혁	1984년 12월 지점 설립

####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2)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의무와 책임 [의무]

-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 ③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위험관리 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시정요 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책임]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소및 연락처	0733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 타워I, 44층 ☞ 02-769-7800
홈페이지	korfp.com
연혁	1998년 11월 ㈜한국채권연구원 설립 2000년 8월 금융감독원 일반사무관리업 등록 2022년 6월 한국펀드파트너스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 나. 주요업무

#### (1) 주요업무

- 투자신탁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 상기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집합투자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 02-3215-1400
홈페이지	www.bond.co.kr
회사명	에프앤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 02-721-5300
홈페이지	www.fnpricing.com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88 ☎ 02-2251-1300
홈페이지	www.koreaap.com
회사명	나이스피앤아이(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 02-398-390
홈페이지	www.nicepni.com

#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1. 투자자권리에 관한 사항

#### 가. 집합투자자총회 등

### (1) 집합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에서 정한 사항 및 신탁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등은 아래의 투자자 총회의 소집 절차를 준용합니다. 다만, 종류 집합투자자총회의 운용비용은 그 종류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 모자형투자신탁인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자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는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소집됩니다.

## (2) 집합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서면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 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법 제190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221조에 의하여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 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 (ㄴ)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 (口)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 (a)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 의결권행사의 방법과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 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 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연기수익자총회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연기수익자총회일 1주 전까지 연기투자자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는 법 제190조제8항에 따라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 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도, 법 제190조제6항의 수익자의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및 간주의결권행사에 관한 내용을 준용합니다.

#### (3) 집합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 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9)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 신탁의 합병 등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법 시행령 제225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10)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4)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 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 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집합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225 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는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 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 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 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 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 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 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 ・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등 운용실적에 관해서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아래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공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공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판매회사는 이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의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의 환매수수료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합니다.

####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상장폐지된 경우(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지)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 집합투자기구의 피흡수 합병 /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를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투자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 상기 임의해지 사항 중 소규모투자신탁(50억 미만)에 해당되어 투자신탁이 임의로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 가. 정기보고서

####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 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3) 법 제 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라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가 기재된 서류
  -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수수료와 그 비중

##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3) 투자신탁의 해지 또는 해산

#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발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 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투자신탁의 자산 • 부 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 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기타 법 시행령92조3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 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 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 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3) 자산보관 • 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해지 또는 해산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 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보관 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나. 수시공시

#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단,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제외 한다)
-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5)의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2) 수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홈 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3) 법 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 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및,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 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9)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 포함)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 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 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기 간	매매처명	거래구분	자산구분	거래금액

##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다. 투자중개업자의 선정기준

구분	내용
<증권의 거래>	<ul> <li>① 선정 시 고려사항         <ul> <li>매매주문이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li> <li>중개회사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 일 것</li> <li>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 서 유리할 것</li> <li>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li> </ul> </li> <li>② 선정방법 등         <ul> <li>매매업무 담당부서, 운용부서 및 리서치부서의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투자중개업자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투자중개업자별 배분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실행결과를 분기별로 점검함.</li> </ul> </li> </ul>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증권의 거래>의 경우와 같음

####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 투자주체 : 미래에셋자산운용
- 투자목적 : 투자자와 운용사간 펀드 성과 공유장치 마련
- 투자시기 : 최초설정일
- 투자금액: 2억원
- 투자기간 : 투자일로부터 최소 3년 이상
- 투자금 회수계획 : 위의 투자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2회 이상 분할하여 회수

주1)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①당연 해지사유 발생
- ②소규모 펀드로서 임의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
- ③다른 투자자의 전액 환매로 해지·해산하는 경우
- ④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신규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 설정액이 15억원에 미달하여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다른 모펀드의 자펀드로 편입)되는 경우 또는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해 모펀드를 교체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 ⑤의무투자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펀드를 이전 받는 집합투자업자가 자사펀드 투자 의무를 승계

주2)투자금의 분할 회수는 회차별로 1개월 이상의 시차를 두며, 1회당 회수금액은 투자금액의 50% 이내로 합니다. 다만, 투자금이 펀드 수탁고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일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3)투자기간 종료 1개월 이전에 투자금 회수에 대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예정입니다.

주4) 집합투자증권은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집합투자업자가 고유재산 투자를 행하는 것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성과에 대한 보장이나 확신을 의미하지 않으며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보호에 관한 사항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 원본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후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집합투자기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해지관련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며, 해지금은 해지일 등 약정된 지급일에 맞춰 판매회사 등을 통해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임의 해지의 방법 이외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집합투자기구와 합병하는 방법 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을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방법 등으로 소규모 집합투자기

구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합병 또는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 [붙임] 용어풀이

용어	내용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받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투자 • 운용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집합투자기구(=펀드)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 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서, 투자신탁, 투자회사, 뮤추얼펀드, 투자기구 등으로도 불리우나, "펀드"라는 용어 로 가장 널리 불리웁니다.
신탁업자	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코드가 존재하며,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방형(집합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폐쇄형(집합투자기구)	환매가 불가능한 펀드입니다.
추가형(집합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단위형(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의 모집시기(판매기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는 펀드입니다.
종류형(집합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되어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 가방법은 동일합니다.
증권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주식, 채권등)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부동산펀드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부동산과 관련된 증권 등 포함)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금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 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 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 지급 의무만을 바꾸어,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까지의 총 발행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통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소액의 증거금으로 거액의 거래규모를 수반하는 거래로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 다. 레버리지효과는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흔히 발생할 수 있으며, 매우 높은 투자위험을 초래 합니다.
보수	펀드의 운용, 판매 및 관리에 대해 투자자가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수취할 수 있는 보수를 말합니다.
수익자총회 (=투자자총회, 집합투 자자총회)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투자자들이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로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펀드에 가입 (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집합투자업자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을 담보로 맡기 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기간 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 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 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또는 환매 시, 판매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판매의 대가 또는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 등의 명칭으로 구분합니다.
설정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신탁업자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특정기간 이내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수수료 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 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됩니다.
환헤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외국통화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 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등을 이용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위험을 제거하는 환혜지 전략을 구사하 기도 합니다.